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 사건개요

- (2020헌마389) 청구인들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의 회원들로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2016. 5. 24. 개정하면서 ‘2020년 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부분을 삭제하고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규정함으로써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불이행한 것, 2019. 12. 31. 개정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과소보호금지 원칙 등의 헌법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는 소극적이고 미흡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환경권 및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이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각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미래세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하며 차별적 취급을 가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조항을 심판대상에 추가하는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청구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2021헌마126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2022헌마854)에서 정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축목표보다 명백하게 불충분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3헌마846) 청구인들은 정부가 2023. 4.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중 부문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부분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2020헌마389)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 ②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③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되고, 대통령령 제325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이 사건들의 심판대상은 각각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2021헌마1264),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2022헌마854)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되고,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 (2023헌마846)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부의 2023. 4. 11.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량 목표에 관한 부분 등이고, 심판 대상계획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계획 중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량 목표에 관한 부분]

【 부문별 배출량 목표 】					【 연도별 배출량 목표 】									
(단위: 백만톤CO ₂ 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단위: 백만톤CO ₂ e)									
구분	부문	2018 실적	2030 목표		2018(기준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준 (21.10)	수정 (23.3)										
배출량(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686.3*	633.9	625.1	617.6	602.9	585.0	560.6	529.5	436.6**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 ¹⁾	269.6	223.2	218.4	215.8	211.8	203.6	189.9	173.7	145.9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260.5	256.4	256.1	254.8	252.9	250.0	247.3	242.1	230.7	
	건물	52.1	35.0 (32.8%)	35.0 (32.8%)	52.1	47.6	47.0	46.0	44.5	42.5	40.2	37.5	35.0	
	수송	98.1	61.0 (37.8%)	61.0 (37.8%)	98.1	93.7	88.7	84.1	79.6	74.8	70.3	66.1	61.0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24.7	22.9	22.4	21.9	21.2	20.4	19.7	18.8	18.0	
	폐기물	17.1	9.1 (46.8%)	9.1 (46.8%)	17.1	15.1	14.7	14.1	13.3	12.5	11.4	10.3	9.1	
	수소	(-)	7.6	8.4 ²⁾	(-)	3.4	4.1	4.8	5.5	6.2	6.9	7.6	8.4	
	탈루 등	5.6	3.9	3.9	5.6	5.1	5.0	5.0	4.9	4.8	4.5	4.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	-33.5	-31.3	-28.9	-30.4	-29.1	-28.3	-27.6	-26.7	
	CCUS	(-)	-10.3	-11.2 ³⁾	(-)	-	-	-	-0.4	-0.7	-1.3	-3.2	-11.2	
	국제감축	(-)	-33.5	-37.5 ⁴⁾	(-)	-	-	-	-	-	-	-	-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총배출량 - 흡수·제거량)

-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로 400만톤 추가 감축
- 수소수요 최신헌루수소 +10.5만톤, 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은 CCUS 부문에 반영(0.8백만톤)
- 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 국제사회에 제출된 '18년 총 배출량은 727.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톤이며,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부문별 수소점 첫해자리 아래 절삭)

** 국제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정, 최초 활용시기(26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30년 목표에만 반영

※ 위 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종국결정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